

# 「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4월 12일, 김광성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4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4년 4월 16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광성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장려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띄어쓰기 정정 및 자구 수정(안 제9조)
- 교통비 지원대상 세분화 및 확대 지원(안 제9조)
  - (현행) 30만원 ⇨ (개정) 차량미소유자: 30만원 / 차량소유자: 40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4. 16.)

「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  
「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검 토 보 고 서

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4. 12.
- 회부일자 : 2024. 4. 16.
- 상정일자 : 2024. 4. 16.

## 2. 제안이유

-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 운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장려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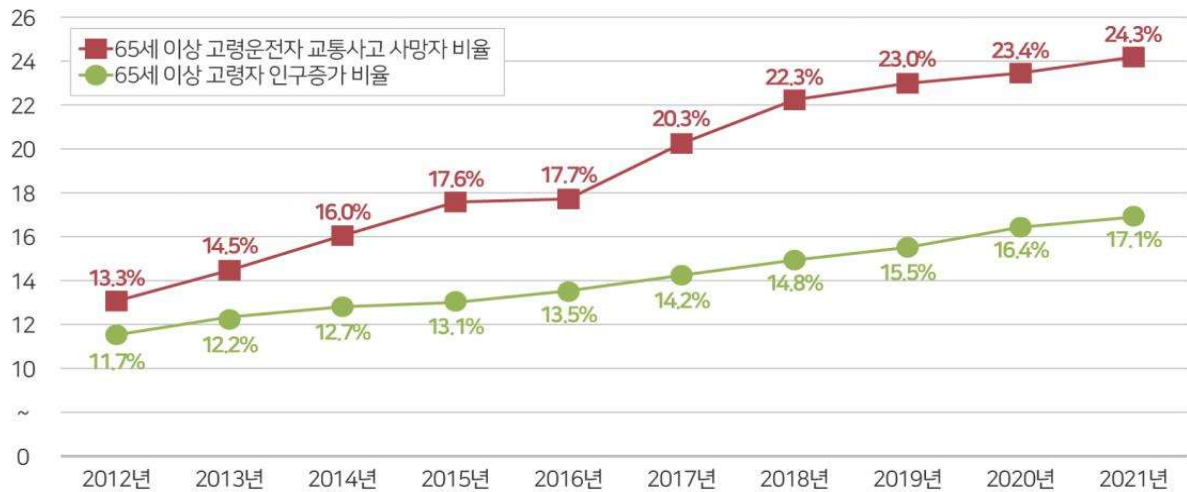
- 띄어쓰기 정정 및 자구 수정(안 제9조)
- 교통비 지원대상 세분화 및 확대 지원(안 제9조)
  - (현행) 30만원 ⇨ (개정) 차량미소유자: 30만원 / 차량소유자: 40만원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('12~'21년)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3.3%에서 24.3%까지 11.0%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,

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및 인구 증가 비율



※ 출처: 통계청,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

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( '12년 11.7% ⇒ '21년 17.1%, 5.4%p ↑) 추세와 비교해도 약 2배 높은 수치로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.

-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에서 ‘지자체는 주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## 나. 입법의 취지

-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장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9조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)에서 실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문맥상 자연스럽게 조문을 수정함.

※ **현행** 30만원 → **개선** 차량미소유자: 30만원 / 차량소유자: 40만원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, 상위 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붙임 1 타 지자체 사업현황

### ○ 도내 현황

(2024년 사업계획 기준, 단위: 세, 만원, 명)

지자체	연령	금액	형태	지원인원	자체사업 추진 여부
춘천시	65	10	지역상품권	674	추진
원주시	65	10	교통카드	380	-
강릉시	65	20	지역상품권	600	추진
동해시	65	10	현금	603	-
태백시	65	10	지역상품권	45	-
속초시	65	10	현금	121	-
삼척시	65	15~30	현금	121	추진, 차등지급
홍천군	70	10~20	현금	127	추진, 차등지급
횡성군	65	10	현금	91	-
영월군	65	10	현금	61	-
평창군	70	30	현금	73	추진
정선군	65	10	현금	61	-
철원군	65	10~30	지역상품권	79	추진, 차등지급
화천군	65	20	지역상품권	24	추진
양구군	65	30	현금, 택시쿠폰	50	추진
인제군	65	20	지역상품권	61	-
고성군	65	10	현금	42	-
양양군	65	10	현금	48	-

### ○ 전국 지자체 지원금액 현황

- 30만원: 16개 지자체
- 50만원: 2개 지자체(구례군, 진도군)
- 그 외 지자체는 10만원 ~ 20만원 지원

### ○ 차량소유자와 미소유자를 구분한 지급조건을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

- 전국 4개 지자체: 영동, 나주, 구례, 강진

## 붙임 2 평창군 사업 추진실적

###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금 지원사업 추진실적

#### □ 개 요

- 사 업 명 :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
- 추진근거
  -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
  -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제9조
- 사업대상
  -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
  - 2021년 6월~12월 한시적으로 만65세 이상으로 적용
- 지원내용
  -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, 인센티브 지급(100천원)
  -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(2021. 11. 5.)  
2022. 1. 1.부터 인센티브 300천원 지급

#### □ 추진현황

- 2020년 추진실적
  - 예산액 : 8,000천원(도 2,400, 군 5,600)
  - 집행액 : 8,000천원(도 2,400, 군 5,600)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80	8,000	
1월	14	1,400	
2월	18	1,800	
3월	8	800	
4월	4	400	
5월	7	700	
6월	3	300	
7월	3	300	
8월	7	700	
9월	2	200	
10월	8	800	
11월	5	500	
12월	1	100	



○ 2021년 추진실적

- 예산액 : 44,800천원(국 11,040, 도 2,400, 군 5,600)
- 집행액 : 7,500천원(도 2,400, 군 5,600)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75	7,500	
1월	12	1,200	
2월	2	200	
3월	2	200	
4월	7	700	
5월	12	1,200	
6월	7	700	
7월	2	200	
8월	1	100	
9월	2	200	
10월	10	1,000	
11월	11	1,100	
12월	7	700	

○ 2022년 추진실적

- 예산액 : 36,300천원(도 2,430, 군 33,870)
- 집행액 : 36,300천원(도 2,430, 군 33,870)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121	36,300	
1월	23	6,900	
2월	16	4,800	
3월	15	4,500	
4월	13	3,900	
5월	10	3,000	
6월	3	900	
7월	2	600	
8월	2	600	
9월	13	3,900	
10월	1	300	
11월	0	0	
12월	23	6,900	

○ 2023년 추진실적

- 예산액 : 36,000천원(국 3,000 도 2,100, 군 30,900)
- 집행액 : 33,600천원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120	36,000	
1월	29	8,700	
2월	12	3,600	
3월	16	4,800	
4월	14	4,200	
5월	10	3,000	
6월	5	1,500	
7월	4	1,200	
8월	7	2,100	
9월	12	3,600	
10월	3	900	
11월	8	2,400	

○ 2024년 추진실적

- 예산액 : 7,300천원(국 2,190 도 1,533, 군 3,577)
- 집행액 : 7,200천원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지급인원	지원금액	비고
합 계	24	7,200	
1월	23	6,900	
2월	1	300	
3월	-	-	

[붙임 1]

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김 광 성 의원

#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4월 12일

발 의 자: 김광성 의원

찬 성 자: 이은미, 이창열, 남진삼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인구 고령화,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 인구의 증가,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치사율 증가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예방책 필요
-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자, 지원대상 세분화 및 확대지원을 제안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띄어쓰기 정정 및 자구 수정(안 제9조)
- 나. 교통비 지원대상 세분화 및 확대지원(안 제9조)
  - (현행) 30만원 ⇨ (개정) 차량미소유자: 30만원 / 차량소유자 40만원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- 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: 2024. 3. 18. ~ 2024. 4. 7.(20일간),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4. 3. 7. ~ 2024. 3. 15., 의견 없음

##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”를 “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”로, “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”를 “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는”으로, “3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을 할”을 “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를 지원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차량 미소유자: 30만원
2. 차량 소유자: 40만원(면허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로 본다)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)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<u>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) ----- --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 항제20호----- <u>자진 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-----</u>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를 지원할 ---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차량 미소유자: 30만원</u></li> <li>2. <u>차량 소유자: 40만원(면허반 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 우에는 차량 소유자로 본다)</u></li> </ol>

[관계법령]

<도로교통법>

제93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) ①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(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(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3호, 제7호, 제8호, 제8호의2, 제9호(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14호, 제16호, 제17호,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(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),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

20.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(失效)시킬 목적으로 시·도경찰청장에게 **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**. 다만,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

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6